

# 강사인사규정

제정일자 2019.07.01.  
개정일자  
소관부서 총무부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의과학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“강사”의 임용과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“강사”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비전일제로 근무하는 강사를 말한다.

## 제 2 장 임 용

**제3조(자격)** 강사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.

**제4조(임용시기)** ①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및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대학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**제5조(임용절차)** ① 강사 신규채용은 공개채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채용 할 수 있다.

② 신규임용 심사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강사신규임용세칙에 따른다.

**제6조(임용기간)**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기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1.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·연구년(6개월 이하)
2. 교원의 직위해제·퇴직·면직·사망

② 임용기간은 통산하여 최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의거 임용기간 초과자를 해당 학과에 재임용 추천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할 수 있다.

**제7조(임용제한)**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심사과정에서 기밀준수여부 또는 불공정 문제가 제기된 자
2. 학과 및 대학의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3. 재임용탈락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4.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대학 강사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자

**제8조(임용취소)**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교육공무원 임용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
2. 임용 시 제출서류가 허위사실 또는 허위 증명인 경우
3. 담당하기로 한 과목의 폐강 또는 과목이 속한 학과의 폐과 등 교육과정 상 불가피하게 강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
4. 임용이 확정된 강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기 근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

**제9조(당연퇴직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
1. 임용기간 만료 후, 다시 임용되지 않은 자
2. 계약으로 정하는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자
3. 국가공무원법 제33조, 사립학교법 제57조에 해당하는 자
4. 해당학기에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자

**제10조(면직사유)**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을 할 수 있다.

1. 정관,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경우
2.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
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4. 학과가 폐지되거나 과원이 되었을 경우
5. 담당교과목 모두가 폐강된 경우
6.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
7.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8. 다음 목의 사유로 교무처장으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
  - 가. 제14조 제2항에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
  - 나. 수업 및 휴·보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- 다. 성적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
9.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·선동한 경우
- ② 강사가 면직사유로 인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.

### 제 3 장 재임용

- 제11조(재임용)** ①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.
- ②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1호 서식 ‘강사 재임용 심의 신청서’ 및 관련한 서류를 총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.
- ③ 재임용 평가 시기는 재계약 예정 직전학기 중에 실시하며, 재임용평가는 별지2호 서식 ‘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’에 따라 평가한다.
- ④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재임용한다.
- ⑤ 재임용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된 강사는 당연 퇴직한다.

- 제12조(재임용 탈락 시 소명)** ① 재임용 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② 교원인사위원회는 이의 신청된 강사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재심의 한다.

- 제13조(재임용 거부)** 강사가 재임용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1.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담당교과목을 폐지한 경우
  2. 소속 학과가 폐과한 경우
  3.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규 전임교원을 채용한 경우
  4.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### 제 4 장 직무 및 근로조건

**제14조(의무)** ① 강사는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령과 본 대학교에서 정한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강사는 담당 교과목의 교육과 연계된 교육지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.

1. 수업과 관련된 문서(강의계획서, 평가계획서, 평가 관련 결과보고서 등) 작성 및 준수
2. 담당 교과목의 강의 및 성적 처리
3. 담당 교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
4. 대학지정 법정 의무교육 이수 : 대학 학사운영 설명회, 성폭력예방 관련 교육, 장애학생 인식 관련 교육 등

③ 교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,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**제15조(소속)** 강사가 본 대학교 내의 여러 학과에서 동시에 강의하는 경우 최초에 임용 이 결정된 소속에 따르며 재임용 시 강사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**제16조(교수시간)** 강사는 주당 6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과정 운영 상 부득이 할 경우 주당 9시간까지 할 수 있다.

**제17조(처우)** ① 임금은 본 대학교 강사료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적용 및 퇴직급여 지급은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③ 강사 본인의 사정으로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2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(계열)장에게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무처 소속은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.

**제18조(휴직)** ①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육아휴직은 휴직 신청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.

②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.

**제19조(휴직기간의 만료 등)** ① 휴직기간이 만료되고도 복직하지 아니하는 강사는 자동면직된다.

- ②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, 총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- ③ 휴직기간 중에는 재임용을 할 수 없으며,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.

**제20조(휴직교원에 대한 처우)** 휴직중인 강사는 대학 강사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## 제 5 장 징계

**제21조(징계의 사유)** 본 대학교에 소속된 강사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.

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정관, 복무규정 등 제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신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사람
2. 금품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 유용,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성희롱 성폭력, 기타 직무상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**제22조(징계사유의 시효)**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(금품 및 향응수수, 공금의 횡령 유용, 성폭력범죄, 성매매, 성희롱,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)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.

**제23조(징계의 종류)** ① 징계는 파면, 해임, 정직, 감봉, 견책으로 한다.

- 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.
- 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, 보수의 3분 1을 감한다.
-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.

**제24조(강사징계위원회의 구성)** ① 강사의 징계처분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강사징계위원회를 대학 내에 둔다.

-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③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**제25조(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)** ①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- ②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.
- ③ 위원장은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26조(제척사유)**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**제27조(위원의 기피 등)** ① 징계대상자는 강사징계위원회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강사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강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28조(징계의결요구사유의 통지)** 강사의 임면권자가 강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**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- ② 강사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- 제30조(징계의결)** ① 강사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- ② 임면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- ④ 강사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31조(징계의결의 기한)** 강사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32조(비밀누설의 금지)** 강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- 제33조(보칙)** ①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등을 준용하며,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1. 이 규정은 2019.07.01.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제 2호 서식]

## 강사 재임용 심사 평가표

학과	과목	성명	심사결과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평가 항목	항목배점	배점한도	취득 점수
- 강의계획서 작성 ※ 미작성 : 0점 / 기간 미준수 : 강좌당 5점 감점	10	10점	
- 출결관리 준수 ※ 출결 미처리 : 강좌당 5점 감점	20	20점	
- 학과 성적검증 준수 ※ 미준수 시 1건당 5점 감점	20	20점	
- 교과목 CQI 보고서 및 수업만족도 개선안 작성 ※ 미작성 : 미작성시 10점 감점	10	10점	
- 수업관리 강의시간 미준수(늦게시작, 조기종료등)	10	10점	
- 강의평가 Pass/Fail - Pass : 30점 / Fail : 0점 * 강의평가는 Fail이 학기당 1개라도 있을 경우 0점 처리	30	30점	
합 계		100점	

- 1) 평가점수 합계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대상자로 한다.
- 2) 강의평가 점수는 직전학기 2개 학기 평균점수로 평가한다. 단, 평가기간 중 임용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직전1개 학기 점수로 평가한다.
- 3) 강사 재임용 평가표는 심사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하고 참석교원 과반수 이상의 합의로 위원장이 작성한다.
- 4) 기말강의평가 설문문항 제4번 '강의 중 폭언, 비속어, 성희롱 발언을 하지 않았다.(Yes/No)' 중 No 답변이 응답자의 10%이상일 경우는 강의평가규정 제6조(평가점수)①항에 따라 Fail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평가합니다.

년 월 일

평가위원 성명 \_\_\_\_\_ (서명)